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261호 2013.07.26(금)

조 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 1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회 람									
--------	--	--	--	--	--	--	--	--	--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문화공보과 (610-407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4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시작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망루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 구조 장비
6. 그 밖의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시작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 등) ① 구청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의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총괄 운영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 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 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연장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게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하며, 이때 양성(남성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구성·운영
2. 휴일상황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상황근무)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상황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상황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3조(안전시설 설치비) 구청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홍보)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전광판
2. 휴대전화, 구 홈페이지
3.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4. 그 밖의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제1조 ~ 제3조)
- 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제4조 ~ 제7조)
- 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제8조 ~ 제15조)
- 라.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제16조 ~ 제18조)
- 마.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제19조 ~ 제22조)
- 바 예산 및 홍보 (제23조 ~ 제2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 다음의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수영구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자우편 ID 보급 삭제 (제5장)

나.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제1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념물 등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기본 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장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제4조(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 문화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관련공무원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재임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해촉)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지득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제15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지정명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유·무형을 나누지 않고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

제17조(지정기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지역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18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

제19조(지정서 교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0조(고시)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 향토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2. 향토문화유산 내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
 3. 향토문화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검토
-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4조(향토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

제25조(정기조사)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서 등에 기록해야 한다.

제26조(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제15조 관련)

향토문화유산 명칭			수	량	
소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연락처		
향토문화유산 연혁	※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향토문화유산 현황	※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향토문화유산 위치도, 도면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위와 같이 수영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합니다.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수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제19조 관련)

○ 명 칭 :
 ○ 구 분 :
 ○ 소재지 :
 ○ 수 량 :

위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수영구청장

(앞면)

(뒷면)

소유자	주소	소재지	교부연월일	기록인
(변경사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교부연월일	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제19조 관련)

발급 번호	발급 월 일	문화재명	지정 번호	지정 년 월 일	향토문화 유산 지정내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보 구 호 역	관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성명

◆제정이유

-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향토문화유산의 기본원칙 (제1조 ~ 제3조)
- 나.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 ~ 14조)
- 다.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15제조 ~ 제24조)
- 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 ~ 제2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외의 부분)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탈루”를 “버려지거나”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자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구청장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과년도” 를 각각 “지난해” 로 하고, 제4중 “탈루” 를 “버려지거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 1건당 30만원(같은 건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 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6조 중 “과년도” 를 “지난해” 로, “탈루” 를 “버려지거나”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제 제3호서식까지 중 “과년도” 를 각각 “지난해” 로, “탈루” 를 각각 “버려지거나”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지급)가 신설됨으로써 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명시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조례에 명시 (제1조)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 지급)가 신설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 따른 용어정비 (제2조)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용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용어로 통일

다.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 신설 (제2조제2항)

▶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른 징수,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로 체납액 징수 등

라. “과년도” 를 “지난해” 로 용어순화 (제3조, 제6조)

마. 별지서식 용어 순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 3호서식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연면적 5,000㎡이상(주요간선 도로변 및 해안에 접하는 경우 연면적 2,000㎡이상) 신축의 경우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계획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을 “구의원, 건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사전에 위원 스스로 이를 회피할 수 있다.

1. 해당 심의안전에 용역·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안전 관련업체 등에 재직하였거나 심의안전 관련자(건축주, 관련업체 대표자 등)와 친족관계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7인”을 “10명”으로 한다.

별표 1. 도시공간시설 중 공공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축

- 1) 공공청사 (구청, 동주민센터)
- 2)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관광, 공연, 전시, 관람, 집회 등을 위한 시설)
- 3) 복지 및 교육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 4) 환경관리시설 (환경미화원대기소, 공중화장실)
-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나. 가의 1)부터 5)까지 중 증축 또는 설계변경으로 외관디자인이 변경되는 건축물
 (※ 외관디자인 : 건물 외부마감재 및 건물 형상 등)

같은 표 1. 도시공간시설의 민간건축물란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의 “5층” 을 “6층” 으로 하며, 비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의 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의 1/10 이내의, 또는 2개 층 이하의 증가는 제외

같은 표 2. 도로시설물의 도로시설물란 다목 중 “설치하는” 을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 으로 한다.

같은 표 2. 도로시설물의 편의시설란 중 가목 “벤치, 의자” 를 “10개 이상의 벤치, 의자” 로 하고, 다목의 “휴지통” 을 “10개 이상의 휴지통” 으로 한다.

같은 표 외의 부분 중 비고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 수영구의 원활한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 및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제10조) : 제3항 신설

⇒ 디자인 심의대상 중 제외 기준 추가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제11조)제2항, 제4항 개정

⇒ 위원 중 구의원 추가, 연임을 1회 개정

다. 회의 (제14조) : 위원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심의 제척 ,회피 등 규정 추가

라. 소위원회(안 제15조) : 소위원회 위원을 7명 →10명으로 개정

마. 별표 내용 개정 : 도시디자인 심의 대상시설물 심의 내용 기준을 명확하게 함

1) 도시공간시설 분류 중 심의대상 공공건축물 심의대상 명확화

- 신축으로 구분하고 증축 및 설계변경대상으로는 외관디자인 변경에 한함

2) 민간건축물의 심의대상 건축물 완화 (5층 →6층)

3) 도로시설물 중 다호 개정(도로에 설치하는 길이50m이상으로 제한)

4) 편의시설 중 가호, 다호 개정 (10개 이상으로 기준 마련)